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찬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51

발의연월일: 2021. 4. 1.

발 의 자:정찬민·조수진·홍문표

박대수 · 곽상도 · 백종헌

배준영 • 권영세 • 지성호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사학진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함)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,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,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, 그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9조).

법률 제 호

한국사학진홍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출연금)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경비 부담) 국가는 재단의	제29조(출연금) ① 정부는 재단의
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	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
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
	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
	지급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
	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